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1회용품 폐기물 감량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인 환경우수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사업 참여자에 대한 혜택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환경우수업소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다. 1회용품 사용 저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혜택 제공 근거 마련 (안 제9조제3항)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우수업소”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우수업소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 표지판

2. 1회용품 사용 저감, 고객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물품 또는 상품권
제9조제2항 중 “민간기관·단체”를 “민간기관·단체·사업자”로,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9조제1항에 의한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환경우수업소”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우수업소를 말한다.</u>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u>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u>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u>시장</u> ----- ----- ----- -----.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1. 지정 표지판</u> <u>2. 1회용품 사용 저감, 고객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물품 또는 상품권</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② 시장은 <u>민간기관·단체</u>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u>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 <u>민간기관·단체·사업자</u>----- ----- <u>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시장은 제9조제1항에 의한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u>
--	---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입 안 자	과 장	장 재 일
	담 당	전 동 희
	담 당 자	정 지 혜 (480-5222)